

경주엑스포대공원(공원인프라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함께 근무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6월 8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계약기간
기간제 근로자	미화원	4명	- 경주엑스포대공원 환경정비 - 주차장, 화장실 청소 등 - 쓰레기 집하장 분리수거	2026. 7. 1. ~ 2027. 6. 30. (12개월)
	안내원	2명	- 방문객 안내, 출입차량관리, 방범 등	

2. 응시자격

구 분	주요 내용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성별 · 지역 · 학력	• 제한없음
기 타	• 채용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입사시점(임용예정일 기준) 취업상태가 아닌 자(미취업자) • 경상북도문화공사 인사규정 제12조(채용결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경상북도문화공사 인사규정 제12조(채용결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의2. 공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6의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10. 신체검사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근무조건

- 근로형태 : 계약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 2026. 7. 1. ~ 2027. 6. 30.(12개월)
- 근무시간 : 주5일 근무,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 ※ 주말 및 휴일 근무가능자, 초과근무시 초과근로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무 부여
- 근무지 : 경상북도 경주시 경감로 614 경주엑스포대공원
- 보수 : 월2,520천원(4대보험, 제세공과금 포함) 제수당 별도
- 기타조건 : 당사 기간제근로자 운영 내규에 따름

4.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 6. 8.(월)~6. 17.(수) 17:00	· 홈페이지 등 공고 ·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도착분)
면접전형 대상자발표	· 6. 19.(금) 11:00 이후	· 홈페이지
면접전형	· 6. 24.(수) 10:00	· 엑스포사업단 소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 6. 25.(목) 11:00	· 홈페이지 공고
채 용	· 7. 1.(수) 예정	

※ 상기일정은 내·외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5. 응시원서 접수(이메일 · 우편접수 · 방문)

- 이 메 일 : hyun11@gtc.co.kr *제출후 2일내 담당자 회신 확인
- 우편접수 : (38118) 경북 경주시 경감로 614 공원인프라팀

채용담당자 (054-740-3051) ※ 등기발송에 한하며 마감시간 내 도착하여야 함.

- 소정양식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http://www.igct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접수처 교부 및 단체·우편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 접수기간 : 2026. 6. 8(월) ~ 6. 17(수) 17:00까지

※ 접수마감일 17:00 내 도착분까지 한하여 유효

6. 우대사항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공고일 기준)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가.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나.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	
다. 북한이탈주민		
라. 다문화가족		
마. 의사상자 등	면접전형 만점의 3% 또는 5%	

가.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2) 면접시험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라.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7. 응시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1차	응시원서 접수자	1. 입사지원서【붙임1】 1부. 2. 자기소개서【붙임2】 1부. 3. 공정채용 확인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붙임3】 1부. 4. 결격사유 확인 사유서【붙임4】 1부.
2차	면접시험 대상자	1. 1차전형 제출서류 원본 일체(※ 이메일 접수자에 한함) 2.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 원본 일체(해당자에 한함) ※ 제출시기 : 면접전형 당일 제출
3차	최종합격자	1.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해당자에 한함) 1부 2.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채용 신체검사서, 이력서 각 1부 ※ 채용 신체검사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대체가능

※ 각종 제출서류는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서류만 가능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 합격 결정 관련 증빙서류는 정해진 제출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응시자격 미달로 판단합니다.

8. 유의사항

1.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단계별 전형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4.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블라인드 채용정책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자기소개서에 직·간접적으로 본인의 성명, 학교명, 가족관계, 지인 등의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편견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일체는 시험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7.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 규정을 준용합니다.
8.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별첨1)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9.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른 다음 각 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10. 기타 채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054)740-3051 채용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사지원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입사지원서					
1. 인적사항					
지원구분	☐ 미화원 ☐ 안내원		접수번호		
성명	(한글)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이메일		
	(비상연락처)				
자격사항	공통자격	☐ 공사 인사규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우대사항	☐ 장애인 ☐ 취업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정 ☐ 의사상자 등			
2. 교육사항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교육사항의 직무관련 주요내용 서술기재					
3. 자격사항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4. 경험 또는 경력사항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					
구분	소속조직	직책/직무	근무(업무)기간	상세내용 (본인역할)	
☐ 경험 ☐ 경력					
경험·경력사항의 직무관련 주요내용 서술기재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 본인의 성명, 사진, 출생지역, 회사명, 학교명 등 개인정보 사항은 절대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각 문항별 200자 이상, A4용지 2매 이내)

본인이 직접 작성 바랍니다.(대리작성, 허위 작성시에는 합격 취소 등 불이익 부과)

1. 지원동기 및 지원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보유 역량을 기술하십시오

2. 다른 사람과 협업을 했던 경험에 대해 설명하고, 협업 과정에서 구성원들과의 갈등사례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입사 시 관련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4. 직장인으로서의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설명하십시오

본인은 상기 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공정채용확인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직원 채용비리 방지를 위하여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입사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내에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의 직원이 근무하고 (☐ 있다 / ☐ 없다)
- (1 번의 '있다'로 표기한 경우)친인척 관계에 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성명 (본인)	친인척 현황					
		성명	본인과의 관계	부서명	직급	재직여부	기타

- (1 번의 '있다'로 표기한 경우)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 생각한다 / ☐ 생각하지 않는다)

상기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합격 취소, 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 수집·이용 목적
 -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 수집·이용 항목
 - 성명(본인), 대학 소속 임직원 등과의 관계, 성명, 부서명, 직급, 재직여부
- 보유기간: 재직기간 동안 보유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채용절차 진행 및 향후 고용계약을 체결·유지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위 본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귀하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본인은 2026년도 경주엑스포대공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결격사유에 대하여 공고를 통해 사전에 숙지하였으며, 다음의 결격사유 각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결격사유	해당	해당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	1.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	2.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	3.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	4.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	5.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	6.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2. ☐	6-2.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6-3. ☐	6-3.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4. ☐	6-4. ☐
6의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5. ☐	6-5.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	7.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	8. ☐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9. ☐	9. ☐
10. 신체검사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10. ☐	10.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을 인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붙임 5]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 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